

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제정 및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8. 12. 16	'98. 12. 17	'98. 12. 27	'98. 12. 28	산림녹지과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지역경제과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	'	'	'	'	지역개발과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 계설치조례안	'	'	'	'	'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	'	'	'	농업기술 연수과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휴양림 이용시 시설사용료, 입장료, 주차료등 사용요금을 별도로 징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사용요금에 주차료,
입장료를 일괄 징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져 함.

2) 주요골자

- 숲속의 집 사용자는 사용료에 입장료, 주차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
- 숲속의 집 주간 사용시는 별도의 사용료 징수

나.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로 인하여 충주시농공단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1조(목적)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를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으로 개정함.
- 제12조(관리비) 항목을 삭제함
- 각조 공통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함.

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에 일부조항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안제64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안제4조)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에 준하여 관리토록 함(안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신설(안제7조내지 제9조)
-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영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함.(안제10조)

ㄴ. 충주시은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은천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은천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세입에 관한 사항(제2조)
 - 은천수사용료·시설본담금 및 계수수료와 일반회계의 전입금·기타수입금
- 세출에 관한 사항(제3조)
 - 운영관리비 및 기타잡비의 지출

ㄷ.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는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등의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 조성의 재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의회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96. 6. 18일 제정 공포되어 운영중 시설별 사용요금을 시설사용료, 주차료, 입장료등 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므로 사용자로부터 많은 불편사항을 진정 받으므로 시설사용료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를 일원화하고
- 시설사용료 요금표 별표2를 일부수정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95. 1. 14일 조례 제62호로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 '98. 1. 16일 충청북도 조례 제2363호로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가 폐지·공포됨으로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를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 지침으로 개정함에 따라
- 본 조례 내용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97. 3. 12일 제정 공포하여 운영중에 법령에 일부조항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

라. 충주시은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 충주시의 은천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95. 4. 18일 제정 공포한 충주시 읍·면 상수도 및 은천수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인 충주시은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본 조례는 '96. 11. 30일 자로 제정 공포하여 농민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8회)의 기금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과 농촌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 조례 일부가 상위법에 위반되며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질 의]

- 주간이용자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함께 징수할 의의는?

☞ 답 변

- 주간이용자도 함께 징수하고 있으며 숲속의 집 사용자는 일괄계상 징수하고 있음.

나.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질 의]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바꾸는 이유는?

☞ 답 변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가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 개정에 의한 것임.

[질 의]

○제12조 관리비를 삭제해도 농공단지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 답 변

○지금까지 별도 징수하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며 운영에 차질 없음.

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질 의]

○재해대책기금운용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였는지?

☞ 답 변

○재해대책기금 2억 2,000만원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예방차원에서 사용하였음.

[질 의]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기타 행정자치부에서 제외한 사업도 들어 있는지?

☞ 답 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사용토록 제정 하는 것임.

라. 충주시은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질 의]

○ 읍·면상수도 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폐지 되었는지?

☞ 답 변

○ 상수도조례로 통합 되었음.

[질 의]

○ 은천수 세입, 세출 내역을 알고 계신지?

☞ 답 변

○ 은천수와 상모면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은천수 세입은 2억 7,000만원 정도임.

마.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질 의]

○ 제4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운영에 생기는 수입금의 종류는?

☞ 답 변

○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 발생등 입니다.

[질 의]

○ 기금 조성에 기타 지원금은?

☞ 답 변

○ 회원의 출연금 등임.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나.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라. 충주시은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 원안가결
- 마.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부 록

- 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 라. 충주시은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
- 마.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